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중 “조정”을 “조정(디지털·AI 의료기기 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립”을 “수립 및 조사·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항”을 “사항(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의 지불제도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평가”를 “평가(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의 지불제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2025년 2월 22일”을 “2027년 2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2 중 총계 “836”을 “844”로, 일반직 계 “827”을 “835”으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1”을 “89”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1”

을 “10”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
·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8”로, 행정주사보·사회
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
는 간호주사보 “37”을 “41”로, 보건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38”을 “846”로, 일반직 계 “829”를 “837”로, 행정사
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
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1”을 “89”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
1”을 “10”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
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8”로, 행정주사보·사
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7”을 “41”로, 보건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6”을 각각 “33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2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
3”을 각각 “1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하며, 같
은 표 제3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5”를 각각 “1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2”를 “181”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
8”을 각각 “11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6”을 “115”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31”을 각각 “13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9”를 “12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0”을 각각 “218”로, 행정서기 “6”을 “5”

로, 간호조무서기보 “55”를 “5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을 각각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4”를 각각 “352”로, 3급 또는 4급 이하 “318”을 “316”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정원 1명(9급 1명) 및 국립재활원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및 국립재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1. 제3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약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2. 삭제

3. 제39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4. 제39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5. 제3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25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의료기술서기	1

[별표 12]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필수의료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필수의료총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4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

3.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 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의료기술 · 치료재료에 대 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u>조정</u>	3. ----- ----- <u>조정</u> <u>(디지털 · AI 의료기기 등은</u> <u>제외한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 정을 위한 기준 <u>수립</u>	5. ----- ----- <u>수립 및 조사 ·</u> <u>분석</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 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u>사항</u>	7. ----- ----- <u>사항</u> <u>(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의</u> <u>지불제도는 제외한다.)</u>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 제도의 운영 및 <u>평가</u>	8. ----- ----- <u>평가(포괄수가,</u> <u>일당정액제 등의 지불제도는</u> <u>제외한다.)</u>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
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
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
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
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
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
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
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39조(한시정원) ① -----

----- 2027년 2월
22일-----
-----.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36</u>	<u>844</u>	+8
·	·	·	
·	·	·	
일반직 계	<u>827</u>	<u>835</u>	+8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80</u>	<u>284</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1</u>	<u>89</u>	-2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1</u>	<u>10</u>	-1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4</u> · ·	<u>68</u> · ·	+4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	<u>37</u> · ·	<u>41</u> · ·	+4
보건주사보 · ·	<u>9</u> · ·	<u>8</u> · ·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38</u>	<u>846</u>	+8
·	·	·	
·	·	·	
일반직 계	<u>829</u>	<u>837</u>	+8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80</u>	<u>284</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u>91</u>	<u>89</u>	-2
·	·	·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u>11</u>	<u>10</u>	-1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4</u> · ·	<u>68</u> · ·	+4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 ·	<u>37</u> · ·	<u>41</u> · ·	+4
보건주사보 · ·	<u>9</u> · ·	<u>8</u> · ·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u>336</u>	<u>334</u>	-2
일반직 계	<u>336</u>	<u>334</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3</u>	<u>321</u>	-2
·	·	·	
2. 국립나주병원			
총계	<u>183</u>	<u>182</u>	-1
일반직 계	<u>183</u>	<u>18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7</u>	<u>176</u>	-1
·	·	·	
3. 국립부곡병원			
총계	<u>185</u>	<u>184</u>	-1
일반직 계	<u>185</u>	<u>18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2</u>	<u>181</u>	-1
·	·	·	

4. 국립춘천병원			
총계	<u>118</u>	<u>117</u>	-1
일반직 계	<u>118</u>	<u>11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6</u>	<u>115</u>	-1
.	.	.	
5. 국립공주병원			
총계	<u>131</u>	<u>130</u>	-1
일반직 계	<u>131</u>	<u>13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9</u>	<u>128</u>	-1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0</u>	<u>218</u>	-2
일반직 계	<u>220</u>	<u>218</u>	-2
·	·	·	
·	·	·	
행정서기	<u>6</u>	<u>5</u>	-1
·	·	·	
·	·	·	
간호조무서기보	<u>55</u>	<u>54</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u>	<u>16</u>	-1
일반직 계	<u>17</u>	<u>16</u>	-1
·	·	·	
·	·	·	
<u>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u>	<u>1</u>	<u><삭 제></u>	-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54</u>	<u>352</u>	-2
일반직 계	<u>354</u>	<u>352</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8</u>	<u>316</u>	-2
·	·	·	